

자체노력 반영항목, 측정단위,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(제7조제2항 관련)

1. 세출 효율화

반영항목	측정단위	산정공식	단위비용
가. 학교 통폐합,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 체 이전 (移轉) 지원	학교 수	1)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른 통폐합 학교 수 × 단위비용	가) 본교를 통폐합 하는 경우 (1) 초등학교: 6,000,000천 원 이하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 (2) 중등학교: 11,000,000천 원 이하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
			나) 분교장을 통폐 합하는 경우: 4,000,000천 원 이하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
		2)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른 분교장 개편 학교 수 × 단위 비용	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: 500,000천 원
		3)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× 단 위비용	학교(본교에 한정 한다)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) 초등학교: 5,000,000천 원 이하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

			나) 중등학교: 8,000,000 천 원 이하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
		4)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통합·운영한 학교 수 × 단위 비용	가) 1개 이상의 학 교 시설을 폐쇄 하여 통합·운 영하는 경우 (1) 초등학교 폐 쇄: 6,000,000천 원 이하로서 교 육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(2) 중등학교 폐 쇄: 11,000,000 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			나) 학교 시설을 폐 쇄하지 않고 통 합·운영하는 경우: 1,000,000 천원
	학생 수	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× 단 위비용	20,000천원
나. 삭제 <2024. 11. 13.>			
다. 외부로 부 터 의	외부 유치재 원 비율 및	1) 해당 시·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÷ ∑시·도별 전	

교육 투자 유치	증가율	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× 전체 시·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× 2.5% 2) [(해당 시·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- 해당 시·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) ÷ 해당 시·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] ÷ Σ[(시·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- 시·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) ÷ 시·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] × 전체 시·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× 2.5% ÷ 전체 시·도 수 ×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·도 수	
라.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	이월률 및 불용률	(해당 시·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·불용률 -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·불용률 목표치)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에 따른 금액	
	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	해당 시·도의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 × 단위비용	2,000,000천원

순세계잉여 금 예산 편 성 비율	해당 시·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 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 산에 편성된 비율 × 단위비용	1,000,000천원
자체 사회보 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	(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-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 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)으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7호에 따른 적용금액	

비고

1. 삭제 <2024. 11. 13.>
2. 다목의 산정공식 2)를 산정할 때에 “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- 전전전년
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”이 0보다 작은 시·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
다.
3.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에서 “이월률 및 불용률”이란 [(교육비
특별회계 예산의 이월액·불용액의 합산액 ÷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)×100퍼
센트]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. 이 경우 이월액은 [명시이월액×0.8 + 사고이
월액 + 계속비 이월액×0.5]에 따라 산정하고,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하반기
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
하고 산정한다.
4.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
음과 같다.

(단위: 억원)

이월률·불용률 - 이월률·불용률 목표치 예산현액 규모	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	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포인트 이하	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포인트 이하	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
1) 예산현액이 5조 원 미만인 시·도	50	-15	-30	-50
2) 예산현액이 5조 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시·도	75	-25	-50	-75
3) 예산현액이 10	100	-30	-60	-100

조원 이상 20조 원 미만인 시·도				
4) 예산현액이 20 조원 이상인 시·도	150	-45	-90	-150

비고: 위 표에서 “이월률·불용률 - 이월률·불용률 목표치”란 (해당 시·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·불용률 -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·불용률 목표치)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.

5. 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“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”이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의 상반기 지출액을 그 예산과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반기 지출 목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,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.
6. 라목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“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”이란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값이 0.9 이상 1.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, 0.9 미만이거나 1.1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.
7. 라목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의 산정공식은 다음 표에 따른다.

(단위: 억원)

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- 실제값	0 미만	0 이상
적용금액	-10	0

※ 위 표에서 “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- 실제값”이란 (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결산액 비중)으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.

2. 세입 확충

반영항목	측정단위	산정공식	단위비용
자 체 수 입 확충	사 용 료 · 수 수 료수입, 자산임 대수입, 자산매 각대금 및 이 자수입	(1 -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÷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) ×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×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	

비고: 위 표에서 “(1 -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÷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)”이 0보다 큰 시·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.